베트남 관세법령 및 FTA 활용방법

2012.11

주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관세영사

- 목 차 -

I. 베트남 관세법령

- 1. 관세법령 체계
- 2. 관세청법
- 3. 수출입세법
- 4. 통관·검사··감시 등 시행규칙 8. 여행자통관

- 5. 수입통관
- 6. 수출통관
- 7. 관세환급

Ⅱ. FTA 활용요령

- 1. FTA 일반의 이해
- 2. FTA 무역의 특징
- 4. FTA 활용시 유리한 점
- 5. FTA 활용시 유의할 점

- 6. FTA 활용 절차 및 요건
- 7. FTA 활용제외 품목
- 3. FTA 협정 증가추세 8. FTA 원산지기준의 종류
 - 9.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세특혜
 - 10. 원산지검증에의 대응요령

│. 베트남 관세법령

1. 관세법령 체계

헌법/Hi é n pháp/Constitution



법률/ Luật/Law/ QH



시행령/ Nghị định /Decree/ND



시행규칙/Thông tư/Circular/TT



고시/ Quyết định /Decision/QD



지시/ CHỉ THỊ /Directive/CT

핵심 관세법령

- 법률: 관세청법 (Luat Hai Quan), 수출입세법 (Luat Thue Xuat Khau, Thue Nhap Khau) 등 2개
- 그외 다수의 시행령, 시행규칙, 고시 등으로 구성 특히, 관세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관세청이 제정 하는 각종 시행규칙에 많이 게기

기타 법령에 의한 수출입 통관규제 (예시)

-농수산물: 농업개발부 - 우편물·소포: 우정통신부

- 음반·CD: 문화정보부 - 의약품, 화장품: 보건부

- 유해화학물질 : 산업무역부

- 자동차 : 교통운송부 등의 확인서, 허가서 등 필요

2. 관세청법 1: Luật Hải Quan - 42/2005/QH11 (2005. 6. 14)



관세행정조직 해설

조직구조

- 본청(해관총국) 지방청(시·성 해관국) - 일선세관(공단 해관지국)의 3층 구조
- 전국 63개 시·성중 33개에 해관국 설치
- ※ 법적근거: 수상고시- 02/2010/QD -TTg (2010. 1. 15)

조직의 소속 및 지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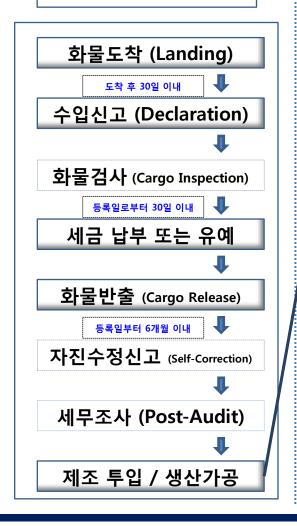
- 각 시·성 인민위 소속 지방공무원 신분
- 관세법령 업무수행과 관련 관세총국이 지휘·감독. 인민위원장도 조정 가능
- 통관업무는 세관지국에서 수행하나,통관후 감사는 본청 · 해관국이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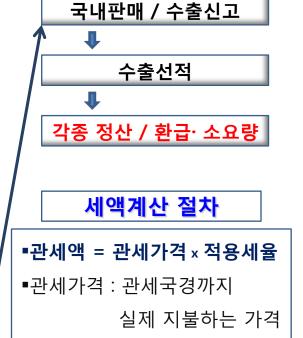
통관 전산화 현황

- 전국 33개 지방관세국 가운데20개 관세국에서만 전자통관신고 가능
- 아직, 전국 전산망 연결은 이루어지지
 않고 있으나, 2015년까지 완성 계획

2. 관세청법 2 : Luật Hải Quan - 주요내용

세관업무 처리절차





■ 적용세율 : AHTN에 따른

특혜세율을 찾아 적용

6단위 HS 수출입세율표상

품목별 일반세율, 우대세율,

관세법의 주요규정

- 세관신고서 제출(QH 제16조): 수입 30일 이내, 수출 출경 8시간전까지
- 세관신고시 제출서류(제22조):
 세관신고서, 인보이스, 계약서, 허가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서류
- 세관신고인의 의무(제23조): 신고 서, 회계장부, 입증서류 등 5년 보관, 세무조사 협조 등
- 통관절차 미완료에도 화물반출 가능
 (제25조): 관세기관 동의, 금융기관 보증
- ■통관후 세무조사(제32조) : 세관신고 등록일부터 5년이내 (서류보관 의무 : 5년)
- ■보세창고(kho ngoại quan) 및 세액징수 유예창고(kho bảo thu ễ)(제47~49조)
- ■보세창고내 물품보관기간(제48조): 12월 이내. 6개월 연장가능
- ■지재권보호 위한 통관중단(제57~59조)
- ■수출입신고 자진수정 (제68조): 신고서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
- ■정산 수출입세법에 규정

2. 관세청법 3 : Luật Hải Quan - 과세가격 및 적용세율

과세시점 / 납부기한 (제70조)

- 신고서 등록 시점부터 기산 (수출입세법 제14조)
- 수출세 : 신고서 등록일부터 30일이내 (수출입세법 제15조)
- 수입세 : " 30일이내 물품 인수전 완납 원칙. 단, 수출원자재는 275일까지 유예가능
- 일시 수출입물품 관세 : 일시 수출입기한 만료일부터 15일이내

과세가격 산정 (제71조)

- 수출물품 가격: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 (수출입세법 제9조)
- 수입물품 가격 : 최초 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
- 적용환율 : 베트남국가은행 (SBV)이 과세시점에 발표한 교환환율
- 적용세율 : 우대세율 (MFN), 특별우대세율 (FTA), 일반세율 (우대세율의 150%)

품목분류 / 적용세율

- 관련 법령(재무부 TT)으로 세부적으로 정함
- 원칙적으로 신고자 스스로 정하나, 관세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자료검토, 샘플 채취 후 재결정
- 신고자가 관세기관의 품목분류 재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, 재분류 요청 민원제기 가능
- 품목분류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 사용하는 AHTN 6단위 분류방식(HS****.**) 사용

3. 수출입세법 1: Luật Thu ế xuất khẩu, thu ế nhập khẩu - 45/2005/QH11 (2005. 6. 14) - 주요내용

관세 부과와 징수

- **과세대상** (제2조) : 국경통과 수출.수입물품, 국경내에서 보세구역과 국내시장간 이동물품
- 비과세대상 (제3조): 국경통과 외국물품, 정부물품, 인도적 무상 원조물품, 외국 ↔ 보세구역 이동물품, 보세구역 ↔ 보세구역 이동물품 (세금이 없다 해도 세관신고는 필요)
- 세액산정 (제8조) : 종가세 = 과세가격 × 관세율, 종량세 = 수출입수량 × 단위당 규정세액
- **납세통화** (제8조) : 베트남 동화, 또는 외화납부가 허용된 자에 한해 경화 납부 가능
- **과세가격 및 과세환율** (제9조) : 관세청법에서 설명
- 관세율표 제정 (제12조): 재무부가 국회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년말 다음해 적용할 세율표를 공표하고 있으며, 베 관세율표는 2012년부터 6단위 분류체계 사용 (한국은 10단위 사용중)
- 과세시점 (제14조) : 등록시점
- **납부기한** (제15조): 소비재는 통관 전에 납부. 기타는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는 보증기한내

3. 수출입세법 2: Luật Thu ế xuất khẩu, thu ế nhập khẩu - 45/2005/QH11 (2005. 6. 14) - 주요내용

관세 면세, 감세 및 환급

- 면세대상 (제16조)
 - 박람회.전시회 참가 물품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.설비.작업용구
 - 요건충족 이사화물 위탁가공 수출입물품
 - 면세기준 이하 휴대품 투자권고 또는 ODA 투자사업 고정자산 형성 물품
- 감세 조치 (제18조)
 - 관세기관의 감시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이 훼손, 분실된 경우 감세조치 가능
- 관세 환급 (제19조)
 - 수입세납부 보세구역 물품 재수출 경우
 - 수입세 납부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
 - 투자사업 허가 받은 법인, 기업이 건설, 조립,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관세납부 물품
 - 세관신고 오류 경우의 환급은 오류가 있은 날로부터 발견한 날까지 365일을 넘지 않을 것
- 환급 시한 (제20조)
 -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환급. 서류 미비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보완요청
 - ※ 15일 넘겨서도 환급되지 않은 경우, 국가기관 잘못이면, 무역은행 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지불

3. 수출입세법 3 : Luật Thu ế xuất khẩu, thu ế nhập khẩu - 45/2005/QH11 (2005. 6. 14) - 주요내용

탈세 조사와 제재, 처벌

- **납세자의 세액관련 위반 처리** (제23조)
 - 세액, 추징금, 벌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**1일 0.1% (1,000분의 1)의 가산세** 추가
 - 연체일이 90일을 경과할 경우, 강제조치 가능 납세자 거래금융기관에서 인출, 납세자재산 압류
 - 납세자 재산압류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, 물품 또는 재산을 경매
 - 허위 납세신고, 탈세의 경우 해당세액의 납부 외에 추가로 탈세액의 1~5배에 해당하는 벌금병과
- **탈세 조사추징 대상기간** (제23조 제5항)
 - 탈세가 발견된 시점부터 이전 5년간에 대하여 추징 가능
 - 오류세액이 확인된 날로부터 365일이내 추징 또는 환급 완료
- **자진 수정신고** (제23조 제5항 후단)
 -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오류 발견하여,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처벌 면제
- 세액, 벌금 미납시 통관절차 중단 (제23조 제4항 제C호)
 - 관세기관은 납세자가 해당 세액,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납세대상자의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중단

4. 시행규칙 1: Thū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; kiểm tra, giữm sũt hải quan; thu ệ xuất khẩu, thu ệ nhập khẩu vũ quản lũ thu ệ đối với hūng hoũ xuất khẩu, nhập khẩu (194/2010/TT-BTC, 06/12/2010)

수출통관 서류 - TT 194의 제11조 제1항

- (기본) 세관신고서 원본 2부
- (기본)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(베어 또는 영어, 기타 언어는 베어 번역)
- (추가) 물품상세목록 원본 1부
- (추가) 수출허가서 원본 1부 (여러 번으로 나누어 선적시는 사본 가능 하며, 회차 설명자료 첨부)
- (추가) 해당물품 주무부처가 요구하는 기타 문건
- (추가) 수출세 면세 물품의 경우, 낙찰통보서 등 서류, 면세 신청서류, 면세대상 입증서류

수출입통관 거래형태

- 일반수출, 일반수입, 해외 위탁 임가공, 국내 수탁 임가공, 일시수입-수출, 일시수출-수입, 선·기용품, 보세구역 반출입, 환적 등 다양한 형태의 통관형태를 허용
- ※ 자사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거래특성을 고려하여, 통관후 세무조사 회피, 세금부담 최소화 등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거래형태를 모색

4. 시행규칙 2: Thūng tư Hướng dẫn v ề thủ tục hải quan; kiểm tra, giūm sūt hải quan; thu ế xuất khẩu, thu ế nhập khẩu vũ quản lũ thu ế đối với hūng hoũ xuất khẩu, nhập khẩu (194/2010/TT-BTC, 06/12/2010)

수입통관 서류 - TT 194의 제11조 제2항

- (기본) 세관신고서 원본 2부
- (기본) 매매계약서 사본 1부, 또는 위탁수입계약서 사본 1부 (베어 또는 영어, 기타어는 베어 번역)
- (기본) 상업송장 원본 1부
- (기본) 운송장 또는 운송증명서 사본 1부
- (추가) 물품상세목록 원본 1부
- (추가) 품질검사·식품안전·동물검역·식물검역 대상인 경우 검사등록증, 검사면제통보서, 검사결과 통보서 등 원본 1부
- (추가) 감정서 원본 1부
- (추가) 수입허가서 원본 1부 (여러 번으로 나누어 선적시는 사본 가능 하며, 회차 설명자료 첨부)
- (추가) 원산지증명서 원본 1부
- (추가) 수입세 면세 물품의 경우, 낙찰통보서 등 서류, 면세 신청서류, 면세대상 입증서류

4. 시행규칙 3: Thū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; kiểm tra, giūm sūt hải quan; thu ế xuất khẩu, thu ế nhập khẩu vũ quản lũ thu ế đối với hūng hoũ xuất khẩu, nhập khẩu (194/2010/TT-BTC, 06/12/2010)

세관신고서 오류의 자진 수정신고 - TT 194의 제12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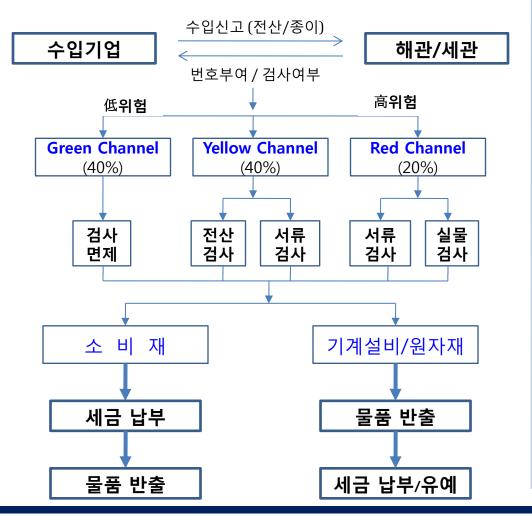
-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오류를 발견하여, 부족세액 및 지연이자 자진납부
-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도 오류를 발견하여, 부족세액 및 지연벌금 자진납부 (관세당국이 사후조사에 의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음)

정산절차

- 수출통관후 수입신고서 정산 (TT 제35조 및 제132조): 원료 수입절차 진행한 세관지국에서 실시 수출물품 세관신고서 등록일로부터 45일이내
- 경제특구, 보세구역내 생산업체의 정산보고 (TT 제44조 제10항):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기간내의 수출.수입 물품, 반입.반출.재고 현황에 대해 세관에 보고해야 함 관세총국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정산보고
- 기타 정산: 수출업체에 원자재 공급, 일시 수출입, 임가공 수출입, 국내 보세공장간 거래, 투자사업이행을 위한 설비.기계.원재료.반제품 수입, 보세구역내 생산업체, 환급신청, 면세, 관세유예 등의경우 해당 정산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의무 ※ 구비서류: 정산대상 업무유형에 따라 다름

5. 수입통관

※ 육류·수산물·곡류·두류·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



☞ 수입신고時 구비서류

- ㅇ 수입신고서
- ㅇ 수입계약서
- o 상품송장 (Invoice)
- o 포장명세서 (Packing List)
- o 선하증권 (B/L, AWB)
- ※ 전체 평균관세율은 10%로 높은 수준, 한국은 전체 평균세율이 약 2% 수준

☞ 반출前 세금납부 대상

- ㅇ 재정부 지정 소비재
- ㅇ 설립 후 1년 미경과 업체
- ㅇ 납부유예기간중 법 위반업체
- o 법 위반으로 1년내 局 1회, 支局 2회 이상 처벌업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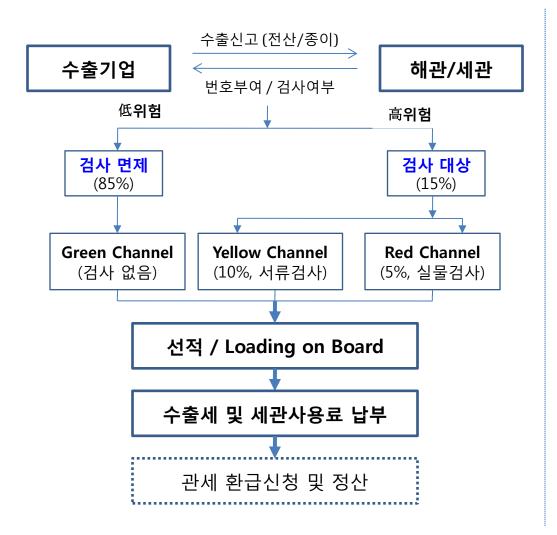
☞ 반출後 세금납부 대상

- ㅇ 비소비재 + 성실업체
- ㅇ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

※ 근거법령

- o 45/2005/QH11 (2005. 6. 14)
- o 154/2005/ND-CP (2005. 12.15)
- o 194/2010/TT-BTC (2010. 12. 6)
- o 1171/QD-TCHQ (2009. 6. 15)
- o 2396/OD-TCHO (2009. 12. 9)

6. 수출통관



☞ 수입신고時 구비서류

- ㅇ 수출신고서
- ㅇ 수출계약서
- o 포장명세서 (Packing List)
- ㅇ 수출허가서 (필요한 경우)
- 수출신고서를 출력하여수출항구에서 세관원에게제출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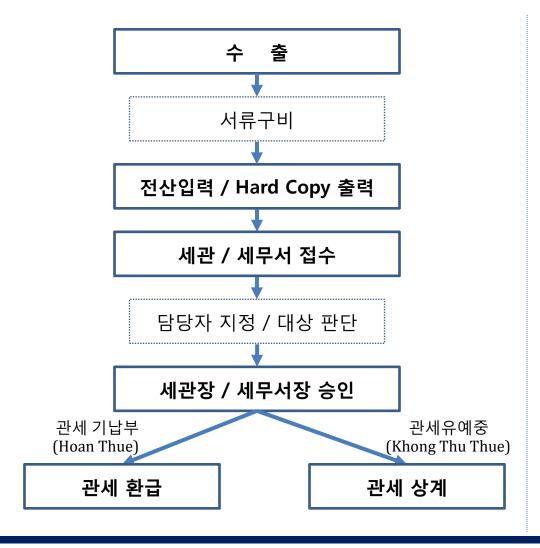
☞ 수출세 납부대상 (79품목)

- 원유 (10%), 석재 (17%), 석탄 (15%), 목재 (5~10%) 등
- * 수출세: 신고일부터 30일내 납부 * 수출세목: 184/2010/TT-BTC
- * 수줄세목 : 184/2010/TT-BTC (2009. 11. 15)

※ 근거법령

- o 45/2005/QH11 (2005. 6. 14)
- o 154/2005/ND-CP (2005. 12.15)
- o 194/2010/TT-BTC (2010. 12. 6)
- o 1171/QD-TCHQ (2009. 6. 15)
- o 2396/QD-TCHQ (2009. 12. 9)

7. 관세환급



☞ 환급신청時 구비서류

- ㅇ 수출신고서
- ㅇ 수입신고서
- ㅇ 소요량정산서
- ㅇ 대금결제 확인서류

☞ 환급대상 세금

- ㅇ 수출관세
- ㅇ 수입관세
- ㅇ 특별징수세
- ㅇ 부가가치세
- * 관세는 관세국에, 부가가치세는 국세국에 신청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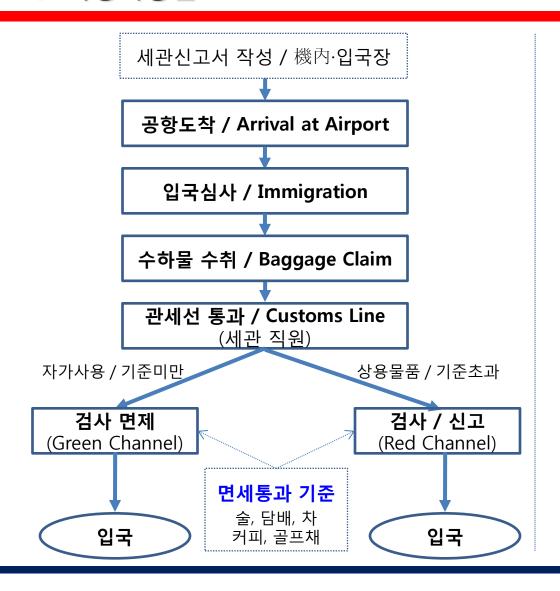
☞ 환급신청 제척기간

- o 당초 수출목적 신고된 경우 → 무제한
- 당초 내수목적 신고된 경우→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

※ 근거법령

- o 45/2005/QH11 (2005. 6. 14)
- o 154/2005/ND-CP (2005. 12.15)
- o 194/2010/TT-BTC (2010. 12. 6)

8. 여행자통관



☞ 휴대품 면세통관 기준

o 술 : 22° 이상 1.5 리터 22° 이하 2.0 리터

ㅇ 담배: 20갑, 엽궐연 100개비

o 차 : 5Kg

o 커피: 3Kg

ㅇ 골프채 : 자가사용 허용

o 금액한도: 5백만동(USD250)

☞ 휴대 외환·동화 신고기준

외화: USD 5,000 이상은 출입국시신고의무

o VND: 1,500만동 초과시 신고

※ 근거법령

o 66/2002/ND-CP (2002. 7. 1)

Ⅱ.FTA 활용방법

1. FTA 일반에 대한 이해

□ FTA 체결목적

- o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서 체결상대국 상호간 관세•비관세 무역장벽 제거
- → 설비투자 없이도 가격경쟁력 개선, 수출•소득•일자리 확대. (EU 회원국간 관세부과 하면? 가격↑)

□ FTA의 다른 이름, 그러나 효과는 같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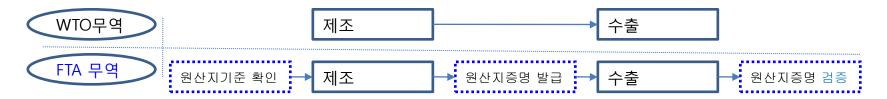
- o CU (Customs Union, 예; EU), CM (Common Market, 예; 공동시장), EPA 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, 예; 일본), ECFA (Economic Corporation Fundamental Agreement, 예; 중국), CER (Closer Economic Relationship, 예; 호주-뉴질랜드), TPP (Trans-Pacific Partnership), GSTP
- ※ TPP; 2006년 싱가폴, 브루나이, 칠레, 뉴질랜드가 체결한 FTA였는데, 2010년 미국이 가입의사 표명했고, 이어 호주, 페루, 베트남, 말레이시아도 참여의사 표명하여 현재 협상진행 중

□ 베트남의 FTA 추진동향

- o 기발효: ASEAN, ASEAN-Aus-NZ, -Korea, -China, -India, -Japan, Viet-Japan, Chile
- 추진중: EU, USA, Korea, TPP, EFTA, 러시아·벨라루스·카자흐스탄
- ※ 對베트남 평균관세율 (출처 ; WTO, %) : 일본 3.9, EU 4.7, 미국 5.1, 호주 5.9, 중국 10.1

2. FTA 무역의 특징

□ FTA 이용절차



※ FTA 원산지 결정기준: 완전생산기준 (주로 농산물), 세번변경기준• 부가가치기준•특정공정기준 (주로 공산품)

□ FTA 무역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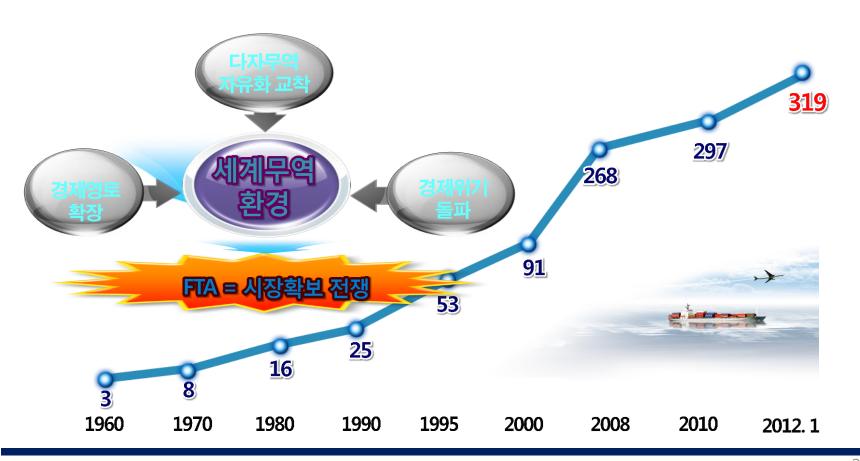
- WTO 무역체제 하에서는 회원국 상품에 대하여 1 품목 1 세율 원칙 적용. 다양한 복수 세율 존재
-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기준 충족 제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율 적용
- 추후에 상대국의 원산지담당기관에 의해서 원산지검증 실시

□ GATT/WTO 체제의 한계 → FTA무역 확산

- 국가마다 사정이 다름에도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시기-동일한 교역조건을 이행하도록 강제 ☞ 국가별 취약분야 및 특수성, 첨예한 국가이익 등 미세한 입장 반영이 불가능하여 혼란 초래
- 회원국간 상호이익 균형, 민감분야 제외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합의된 일정, 수준으로 상호 특혜 □ 국가별 특수성 반영이 용이하고, 이익극대화가 가능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 일로

3. FTA 협정 증가추세

- ■1990년대 초이래 시장확보를 위해 大유행 → FTA가 大勢
- ■2012. 1월 현재 511건이 WTO에 통보되었고, 이 가운데 319건이 현재 발효 중



4. FTA 활용시 유리한 점

- □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→ 경제영토·시장 확대 및 진입여건 개선
 □ 관세 경감 또는 제거 →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
 □ 무역전환 효과 → 가격·관세 높은 기업에서 낮아진 기업으로 거래 변경
 □ 무역창출 효과 → 가격이 낮아져 제품수요가 추가적으로 대폭 증가
 □ 설비가동률 상승 → 생산량 증가로 평균생산비 감소 및 기업이윤 증가
 □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 →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
- ※ FTA 활용하지 않고서는 기업경쟁력 유지 불가. 선택이 아니라 필수
- 예) 신발, 의류 등은 미국 및 유럽 수출시 통상 10~15% 수준 고율관세 납부 치열한 경쟁으로 1~2% 마진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10% 관세인하 효과는 획기적 고객가치 창출과 경쟁력 개선 효과

5. FTA 활용시 유의할 점 - 원산지검증

□ 오해 : FTA가 발효되면, 아무 준비 없이도 관세특혜를 받는다!



준비 안하면,



- ☞ 관세없는 자유무역 활용면허 (원산지증명서, C/O) 필요
- ☞ 관세없는 자유무역 활용의 伏兵 (원산지검증, O/V) 대비 필요
- □ 준비사항: CEO 관심 대책팀 구성, 원산지관리전산시스템 개발, 사내 전문인력 양성, (EU) 원산지인증수출자(A/E) 자격 획득
- □ 선진국들은 원산지검증을 활발히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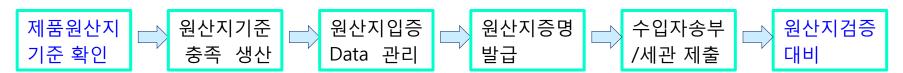
(2009, 건**)**

구 분	스위스	독일	미국	케나다
수출검증	1,966	5,000	-	-
수입검증	1,606	3,000	5,000	2,400
합 계	3,572	8,000	5,000	2,400

□ 주요 Target : 자동차, 섬유, 의류, 가전, 농수산물, AD & CVD 품목 등

6. FTA 활용 절차 및 요건

□ 활용 절차



□ FTA 관세특혜를 위한 5가지 기본요건

거래자요건	역내 거주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 또는 발송하고 수입할 것
품 목 요 건	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. 민감품목 제외
원산지요건	협정에 정해진 일반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것
운 송 요 건	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, 양국간에 직접 운송될 것. 단순 환적은 허용
절차적요건	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(인장, 서명 등), 발급 시기, 신청 시기 등 준수

7. FTA 활용제외 품목

□ AKFTA 관세특혜 차별화를 위한 상품群 분류 – 제외품목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

	일반품목郡	羊(N	Γ)			민감품목群(ST)	양허제외群(Except)
Vietn HS Code 0101 0101100000 010190 0101901000 0101902000 0101902000 010290 0102901000 0102901000 0102901000 0102901000 0102901000 0102901000 0103	- Other: - Race horses - Other horses - Other Live bovine animals Pure-bred breeding animals - Other: - Oxen - Buffaloes - Other Live swine.	AKFT/	A 2007 0 5 5 5 5			_	부록 1 만간품목 목록 변번 HS 코드 폭명 1 190110 - 유아용의 조제식료품(소백용의 것에 한한다) 19011029 - 기타 19011030 - 대두분의 것 19011030 - 교교아를 포함한 기타 2 190190 - 기타조계식료품 19019011 - 제 0401호에서 제0404호의 물품의 것 19019011 - 제 0401호에서 제0404호의 물품의 것 19019013 - 치환유 19019033 - 교교아를 포함하지 않은 기타	부록 2
1	NT : Norma	al ⁻	Tra	ac	k		ST : Sensitive Track	Except : Exception

8. FTA 원산지기준의 종류 -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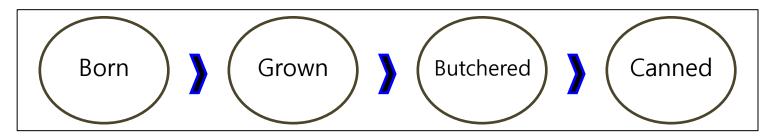
- □ 원산지기준의 정의 : 특정상품에 대한 경제적 국적을 정하는 기준
- □ 원산지기준 종류 및 결정방식

종 류	세부 결정방식
완전생산기준	한 국가내에서 모든 생산과정 완성. 쇠고기 예) Born, Grown, Butchered, Canned
세번변경기준	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인정. 예) 2단위, 4단위, 6단위
부가가치기준	- 공제법 : RVC = (FOB-VNM) / FOB x 100% * RVC : Regional Value Contents - 집적법 : RVC = VOM / FOB x 100% * VNM : Value of Non-originating Materials
특정공정기준	원재료를 실제 변형시키는 주요공정 경료. 예) Fiber>Yarn>Fabric>Cutting&Sewing
역외가공기준	개성공단, Ceuta, Melilla 등과 같은 특정지역도 상대국 영역으로 간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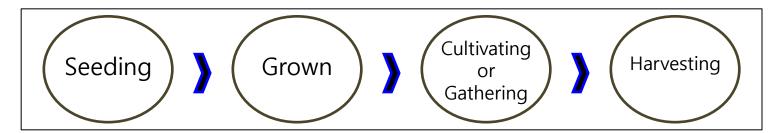
8. FTA 원산지기준의 종류 - 2

□ 완전생산기준

▷ 쇠고기의 경우



▷ 식물/곡물/과일의 경우



9. FTA 원산지 준의 종류 - 3

□ 세번변경 기준

▷ 스위스産 금괴의 경우

■ 원산지기준 : 6단위 세번변경 (CTSH)

■ 조사 배경 : FTA 발효 후 금괴 수입폭증 (430배)

■ 조사 경과 : (1차) 수입자 조사 → 스위스에 검증 요청

(2차) 한국&스위스세관 공동, 수출자 생산공장 방문 조사

■ 조사 결과 : 원산지기준 불충족, 175억 관세 추징



8. FTA 원산지기준의 종류 - 4

□ 부가가치기준

▷ A국産 스포츠靴의 경우

■ 원산지기준 : RVC 40%

■ 조사 배경 : 주요 원재료 수입 + 저가노동 의존 산업

■ 조사 방법 : 수입자 서면조사 → 한국 세관 & 수출국 무역부 현지공동검증

■ 조사 결과: 제3국 발행 인보이스 가격으로 부가가치 계산, 원산지기준 불충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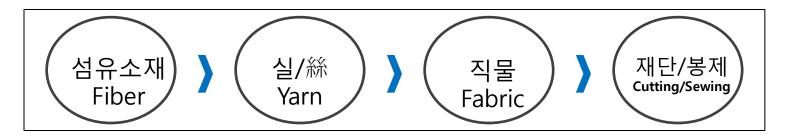
한-아세안 협정관세액 1억 추징

역외産 갑피,아웃솔, 인솔, 에어백: \$13 (당사국 A사 임가공) 완제품 신발 생산자가격: \$20 제3국 송장가격: \$25

8. FTA 원산지기준의 종류 - 5

□ 주요공정 기준

▷ 섬유/의류의 경우



※ 한-미 FTA의 경우: 기본적으로 원사기준(Yarn forward) 채택. 예외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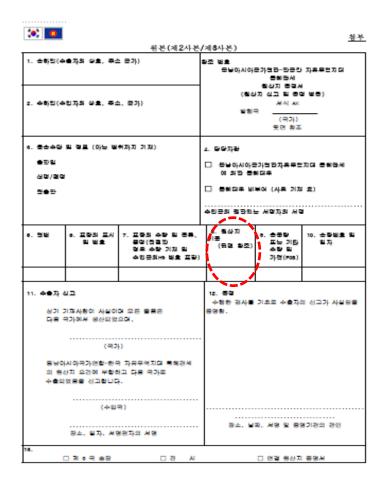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원산지 기준
가방(HS 420212, 22, 32, 92)	편직, 재단 및 봉제
린넨직물(5311)	제직
여성편물재킷(610433, 39)	편직 및 봉제
면/인조섬유제 남성셔츠(620530)	재단 및 봉제
h크릴, 레이온, 라이오셀 등 재생 섬유소재·사	역외 조달 허용

9.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세특혜 - 1

- □ 성격: 거래물품의 제조지, 국적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서류
- □ 종류 : 일반 원산지증명서 Vs. 특혜 원산지증명서
 - o 일반 원산지증명서: 소비자보호 목적, 대개 해당국 商議가 발행, WTO 원산지규정
 - ㅇ 특혜 원산지증명서 : 관세특혜 제공 목적, 해당국 상의 또는 세관 (베트남은 산업무역부
 - 및 지방 산업무역국) 발행. 각 FTA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
- □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
 - o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도록 생산한 후, 각 시·성의 수출입관리과에서 발급 (영어로 작성)
 - ㅇ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 단위로 발급. 동일선적 B/L 분할시는 사전에 세관 확인
 - ㅇ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시 또는 수출신고 직후에 발급
 - ㅇ 한-ASEAN FTA의 경우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

9.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세특혜 - 2

□ 한-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(A-K Form)



- 1. 송하인 (수출자 상호, 주소, 국가)
- 2. 수하인 (수입자 상호, 주소, 국가)
- 3. 운송 수단 및 경로 (아는 범위내 기재)
- 4. 담당자 란 (특혜 부여 여부 기재, 수입국 담당자 기재)
- 5. 연번
- 6. 포장의 표시 및 번호
- 7. 포장 수량/종류/품명(HS Code 포함)
- 8. 원산지기준
- 9. 총중량/수량/가격(FOB)
- 10. 송장 번호/일자
- 11. 수출자 신고 (국명/수입국가명/장소·일자·서명)
- 12. 증명 (발급 검사기관의 확인)
- 13. 제3국 송장 / 전시 / 연결 원산지 증명서

9.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세특혜 - 3

- □ FTA 원산지증명서 사용 = 특혜관세 혜택 활용
 - 원산지증명서는 A4 사이즈 AK Form에 영어로 작성
 -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함
 - 수입국의 HS 번호를 기입해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
 - 발급기관 직인· 발급자 서명, 사인 등 기재사항(과세당국간 사전교환)이 있어야 효력
 -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원본을 전송하여 수입국 관세당국 제출 → 특혜관세 적용신청
 - 수출국 발급기관은 제2 부본 보관. 수출자는 제3 부본 보관 (3년 / 5년) ← 검증 대비
 - 발급기관은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, 생산자/수출자 및 품명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
 - 발급기록을 수입국 관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 (과세당국간 사전 정보교환)

10. 원산지검증에의 대응 요령 - 1

□ 원산지검증 개관

- ■정의: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와 원산지 위조를 통한 세금탈루 방지를 위하여 수입국 관세당국과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을 확인
- ■방법: 직접검증 Vs 간접검증, 서면조사 Vs 방문조사. AK FTA: 원칙; 간접, 예외; 직접
- ■검증: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있으면, 수출국 발급기관은 수출일 전후 6개월의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 수행
- ■현지조사: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, 수출국에 현지조사 요청할 수 있으며, 조사개시 후 6개월내 절차 완료해야 함
- 비협조 / 기준미달 / 요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, 특혜관세대우 배제 또는 관세 추징

10. 원산지검증에의 대응요령 - 2

□ 원산지검증 주요분야

- 특혜세율 적용의 적정여부
-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
- 원산지기준 충족여부
- 특혜관세 적용절차의 적정여부
- 원산지증명 서류의 적정여부
- 원산지확인서 등 입증서류 적정여부

- 원산지검증 협조의무 이행여부
- 원산지관리전산시스템 적정여부
- 1, 2, 3차 협력업체와의 협조체제
- ▶ 원산지관리매뉴얼 구비여부
- 담당직원의 원산지업무 숙지 정도

10. 원산지검증에의 대응요령 - 3

□ 원산지검증 대응요령

- 기업 CEO 관심이 매우 중요 잘못된 지식, 오해, 과도한 신뢰 등이 잘못된 결과 초래
-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·투자 패턴 정착 역내산 원재료 사용 확대, RVC비율 점검
- 원산지기준을 여유있게 넘어서는 <mark>안정적 RVC 마진 확보</mark> 최소 5% 이상
- 원산지 리스크관리 및 자체 점검제도 도입 자체 원산지매뉴얼 작성, 점검팀 구성·운영
- 원산지 증빙서류의 체계적 관리 BOM, 원자재 수입신고서, 구매영수증, 수출계약서 등
- 원산지관리 업무 전산화 증빙서류의 전자적 보관, 협력업체와의 연결시스템 구축 등
- 해외 거래선과 긴밀한 신뢰관계 유지 해외거래선 검증 비협조 → 관세추징 대상 전락
- 하청 협력업체와 협력관계 유지 원산지확인서, 원재료 가격 등 정보교환 필요 //끝//



<맛 있는 떡>



<준비 되어야>



<드실 수 있습니다>

힘내세요!!!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